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 제 1284 호 2021. 4. 1.(목)

###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77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1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57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58호[하천 점용사용 허가 고시] ……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59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 …… 6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407호[2021년 울산 북구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무위탁 사실 및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 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410호[울산광역시 북구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413호[2021년 생활비용보조금지급신청접수 공고] ……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416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1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1년 4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77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공무직 등의 정원표(제5조 관련)

부 서 명	계	공무직				청 경	원 찰
		사 무 실무원	전 문 실무원	시 설 관리원	환 경 공무직		
합 계	119			66	50	3	
주민소통담당관	4			4			
징수담당관	2			2			
총무과	6			6			
문화체육과	2			2			
도서관과	8			8			
복지지원과	3			3			
사회복지과	1			1			
가족정책과	5			5			
농수산과	2			2			
환경미화과	51			1	50		
건설과	10			9		1	
도시과	3			2		1	
공원녹지과	4			4			
교통행정과	2			2			
건축주택과	2			1		1	
보건소	8			8			
문화예술회관	3			3			
의회사무과	1			1			
농소2동	1			1			
강동동	1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건설과 청원경찰의 정년퇴직(2021. 6. 30.)에 따른 정수 조정
- 나. 2020년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따른 공무원 직종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가. 정수 조정

- 1) 2021. 6. 30. 공무원 정년퇴직에 따른 정수 조정
  - 건설과(건설행정) 청원경찰 △1 → 시설관리원 증1  
- 노점상 단속
-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반영
  - 징수과 → 징수담당관

나. 공무원 직종 명칭 변경

- 1) 환경미화원 → 환경공무원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57호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하천의 명칭

호 계 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공사 동\*\*지사장

나. 주소 : 울산\*\*시 \*\* 명촌\*\*길 8

###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전주 이설)

###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호계동 936-54번지

나. 면적

- 단기: 8m<sup>2</sup>

- 장기: 0.196m<sup>2</sup>

### 5. 점용 허가 유효기간

- 단기: 2021. 3. 29. ~ 2021. 3. 30.

- 장기: 2021. 3. 31. ~ 2025.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58호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천 점용협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하천의 명칭

연암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광역시 \*\*도사\*\*부 북부\*\*소장

나. 주소 : 울산\*\*시 \*구 오치골\*\* 1\*

###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설치(상수도 배수관로 매설)

### 4. 점용(변경)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효문동 228-6번지 외 4필지

나. 면적

- 단기: 278.1m<sup>2</sup>

- 장기: 28.8m<sup>2</sup>

### 5. 점용(변경) 허가의 유효기간

- 단기: 2021. 3. 26. ~ 2021. 6. 26.

- 장기: 2021 6. 27. ~ 영구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59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1. 3. 30.
2. 점용·사용의 목적 : 경작
3. 점용·사용의 장소 : 어물동 1240-1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290m<sup>2</sup>
  - 나. 기 간
    - 2021. 3. 2. ~ 2021. 4. 30.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김\*중
  - 나. 주 소 : 울산\*\*\* 복구 \*\*안로 802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407호

## 2021년 울산 복구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무위탁 사실 및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1년 울산 복구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무위탁 사실 및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위탁사무 : 2021년 울산 복구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2. 수탁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비고
(사)한국석면안전협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56, 비동 16층	김규찬	

3. 수탁기간 : 협약일 ~ 2021.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410호

## 울산광역시 복구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울산광역시 복구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모집인원 : 10명 내외
2. 접수기간 : 2021. 3. 30.(화) ~ 4. 9.(금)
3.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5.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6.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복구 기획예산담당관 강동윤  
052-241-7104 / dongyun87@korea.kr
7. 선정결과 : 2021. 4. 15.(목) 18:00까지 개별통지
8. 자격요건
  - 가. 구정업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 나.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복구청 기획예산담당관(☎ 241-710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붙임

신청서

## 울산 북구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신청서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 . . .
주 소*				
직 장*	직장명(직업):	직위:		
연 락 처*	☎ 휴대전화:	직장 :		
E-mail	※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			
주 요 경 력				
비 고				

• 개인정보 이용 기간 : 임기 만료 시까지

\*필수항목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미동의시 신청 불가)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413호

## 2021년 생활비용보조금지급신청접수 공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 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 업 명 : 2021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2020년도 분)
2. 대 상 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73.06.27.)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19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889,781원) 이하인 세대
3. 지원내용 : 2020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급
 

\*\* (차등지급안) 기준소득 대비(초과~이하) 90~100%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4. 신청기간 : 2021. 4. 5. ~ 5. 4.
5. 신청방법: 도시과로 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6.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도시과 (☎052-241-7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416호

##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당직휴무의 사용기한을 확대하여 직원의 쉼 권리를 보장하고, 당직근무 인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당직휴무 사용기한을 6주 이내로 확대(안 제5조)
  - 다음 정상근무일 사용 → 6주 이내 사용
- 당직원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조정(안 제6조)
  - 7급 이하 당직원 3명 → 2명

#### 3.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제4조
-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우)44248, 울산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총무과

- 전화 : 052-241-7203, 팩스 : 052-241-720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2항제1호나목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실과별”을 “부서별”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급보”를 각각 “즉시 보고”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b>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u>금요일·토요일·공휴일 전일 숙직근무자와 토요일·공휴일 일직근무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u></p>	<p><b>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b>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당직수당)</b></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구분청 가. (생략) 나. 당직원 : 7급 이하 <b>3명</b></p> <p>2. ~ 4. (생략)</p> <p>③ ~ ⑤ (생략)</p>	<p><b>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당직수당)</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가. (현행과 같음) 나. 당직원 : ----- <b>2명</b></p> <p>2. ~ 4.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b>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b></p> <p>① (생략)</p> <p>② 구분청의 경우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 중인 경우에는 <b>실과별</b>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p>	<p><b>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b>부서별</b> ----- ----- ----- -----.</p>
<p><b>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b></p> <p>① (생략)</p> <p>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에게 <b>급보</b></p> <p>2. ~ 6. (생략)</p> <p>② (생략)</p> <p>1. 관할 경찰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예비군 소대장에게 <b>급보</b></p> <p>2. (생략)</p> <p>③ (생략)</p>	<p><b>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b></p> <p>① (현행과 같음)</p> <p>1. ----- ----- ----- <b>즉시 보고</b></p> <p>2.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 ----- <b>즉시 보고</b></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b>제17조(비상근무의 종류)</b>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p> <p>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p> <p>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p> <p>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b>제17조(비상근무의 종류)</b>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2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p>

